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4-34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34
----------	---------

발의일자	2024. 03. 06.
발 의 자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변경(안 제6조제1항)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 월 200,000원 ⇒ 월 3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협 조 : 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u>월 900,000원</u>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u>월 200,000원</u>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u>월 1,200,000원</u>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u>월 300,000원</u>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발생요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나.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 추계기간 : 2024. 1. 1. ~ 법 개정 시

나. 추계의 결과

구 분		1차 연도 (24년)	2차 연도 (25년)	3차 연도 (26년)	4차 연도 (27년)	5차 연도 (28년)	합계
총 비용(천원)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264,000
세출	의정활동비 (군비)	52,800	52,800	52,800	52,800	52,800	264,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비용산정 기준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 의정자료수집비·연구비 : 월 1,200,000원 이내
- 보조활동비 : 월 300,000원 이내

나. 거창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5에 따른 최대 금액(월 1,500,000원)

2. 증감비교(400,000원 증액/월 1인 기준)

가. 현 행 : 1,100,000원 지급

나. 개 정 안 : 1,500,000원 지급

3. 연간 소요예산

월 1인당 증액	개 월	인 원	합 계
400,000원	12	11	52,800,000원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진 학 성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

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심의결과」 2024. 3. 5.

1.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최대금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